

화폐도안의 광고행위 이용금지 협조요청

최근 만원권, 오천원권, 백원화 등 화폐의 도안을 그대로 또는 원부 변형하여 신문 및 잡지광고, 할인용 쿠폰, 광고용 전단 등 상업적 광고물에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는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화폐 제작 충동을 유발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기준 등을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9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된 한국은행의 저작물로서 등록하여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의 품위 유지 및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발견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산업계에 주지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왔다. 금호에서는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사례를 풀이한 협조요청 자료를 게재한다.

광고목적으로 화폐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법에 지축되는지 알고 싶다.

‘돈이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돈의 위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위력을 더욱 크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살만큼의 적당한 돈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지극히 일반적일 것이다. 정당하게 획득된 것이라면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 성공의 하나의 징표로서 인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까닭인지 광고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종종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폐사진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 저축상품을 홍보하거나, 전기 절약, 상품 세일 등 갖가지 광고에 만원짜리 지폐 등이 등장하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

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도안'이 포함되어 있어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소유하므로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의 변형 및 무단사용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고 있다.

몇 가지 화폐도안의 오용(誤用) 사례를 보자. PC통신 이용자가 지폐를 스캐닝하여 파일로 올리는 것, 만원권을 컴퓨터로 스캐닝한 후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종대왕 초상을 특징인물로 바꾸고 광고구호를 삽입하여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 만원권 세종대왕의 얼굴을 웃는 모습으로 회화화하고 액면숫자를 다른 액면으로 변경하는 것, 만원권 지폐를 실물보다 작은 크기로 축소 복사한 후 특징인물의 할인티켓으로 만드는 행위 등 많은 화폐도안의 오용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화폐도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저작권법 제 98조 「권리의 침해죄」 등에 의거 강력한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무엇보다 우리 화폐를 지니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화폐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화폐도안의 오용을 항상 감시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우리의 화폐를 사랑하는 일반의 시민의식을 확인하고 화폐와 관련된 법률적 입장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 주요 질의 · 건의 서신 및 답변내용 모음

<서신 1> (중략) 당사는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저희 이용자중에 지폐를 스캐닝하여 파일로 올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위폐사건 등에 악용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런 유형의 자료를 등록하거나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주의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통용되는 유가증권을 스캐닝하거나 인물을 바꾸어 넣는 등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거나 혹은 불법적 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귀행의 고견을 인용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하략)

▶ 답신 : (중략) 화폐의 도안을 컴퓨터 스캐너 등에 의해 복제하여 우리은행의 허락없이 PC통신망에 무단 게재하거나 화폐도안의 원래형태를 변형하여 희화화(戲畵化)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조치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①우리은행이 화폐도안에 대해 갖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 91조, 제 93조, 제 98조 등에 의한 고소 등 법적조치의 대상이 되며 ②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화폐의 제작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제 53조의 2 및 농법 『시행령』 제 16조 등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조문

1.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제9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보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자재산권자 등"이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발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하략)

2.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생략)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금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략)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6. (생략)

⑤~⑥ (생략)

동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서신 2〉 (중략) 컬러복사기에 의해 복사된 만원권 화폐 사진의 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한국은행권의 화폐를 복사 및 인쇄하여 광고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문의하오니 회신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편지봉투에 담아 1억 5천만원 복권 광고를 뿌리고 있는 광고업자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략)

▶답변 : (중략) 1993년 이후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물 제작·배포 사례가 급증하여 화폐 품위손상 및 신용질서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행위가 우리은행의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94년말까지 대국민 계도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95년부터는 동행위 발생시 형사 고소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귀하가 신고한 업소의 경우 광고용 전단 배포시점이 우리 은행의 '화폐도안 사용규제'에 관한 계도활동 기간에 해당되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업소에 대하여 엄중 경고에 그치는 한편 잔여광고물을 회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복권 광고행위는 화폐도안을 이용하지 않는 한 우리은행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우리은행

발권정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3〉 (중략) 당사는 의류업체로서 상품판매 제고를 위하여 당사 상품판매시 동전모양의 쿠폰(기념품)을 아래와 같이 발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저촉 여부를 문의하오니 가까운 시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아래-

1. 용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동전쿠폰 지급, 신구 상품 구매시 일정금액 할인혜택 제공

2. 모양: 앞면-로고 및 연도, 회사상호 색인뒷면-아라비아 숫자(10000) 및 회사상호 색인(하략)

▶답변 : (중략)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은행 주화(동전)과 유사한 모양과 규격의 동전쿠폰이 제작·유통된 경우 자동판매기 등을 통하여 화폐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제 211조 "통화 유사물의 제조" 관련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로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귀사가 동전 쿠폰을 제작·유통코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른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①자동판매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쿠폰의 규격(지름, 두께) 및 무게가 현용 한국은행 주화와 명백히 구분되도록 할 것 ②화폐(기념주화 포함)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숫자 및 문서 금액을 쿠폰 표면에 표시하지 않을 것 ③규격, 무게, 도안 등 세부 제작계획 수련 후 우리은행에 최종 확인을 받으실 것. (하략)